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종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506

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:김종양・박상웅・김준혁

윤한홍 • 고동진 • 신성범

최형두 · 임이자 · 안철수

김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 내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로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심지 우회도로나 대도시권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'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'을 실시하고 있음. 아울러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음.

그런데 「도로법 시행령」에서 사업 대상이 되는 도로의 지역적 범위를 '광역시'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,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의 경우 광역시 못지않게 교통혼잡 개선사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국가보조를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되 사업 대 상 도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특 례시 권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(안 제8조제5항 신설). 법률 제 호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선정 기준, 관리"를 "관리"로 한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동(洞)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.
- 1.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(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 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연 결하는 도로
- 2.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
- 3.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, 공항, 산업단지,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5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전 8 제8조(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 선)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8조(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)① ~ ④ (현행과 같음)⑤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동(洞)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. 1.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(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.이하 같다)와 연결하는 도로 2.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3.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,
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, 관리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	S. 모등이 된교된 기교 정단, 공항, 산업단지, 물류단지 등 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 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로 관리

<u>⑥</u>· <u>⑦</u> (생 략)

<u>⑦</u>· <u>⑧</u>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